

칠곡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. 11. 29.

산업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3. 11. 17.

나. 제출자: 김태희 의원 등 10명

다. 회부일자: 2023. 11. 22.

라. 상정일자: 제296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(2023. 11. 29. 상정·심사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김태희 의원)

가. 제안이유

우리군은 고유 특성과 문화가 어우러진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으며, 그 일환으로 쾌적한 녹색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중앙식수대에 가로수·관목류를 식재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제안하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1) 왕복 4차선 이상 도로에 중앙식수대 식재 신설(안 제23조제3호)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안창호)

○ 「칠곡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

- 쾌적한 녹색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왕복 4차선 이상 도로 공사시 차량소통 및 안전의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중앙분리대 내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,
- 관련 법령과 절차의 이행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특이사항 없음

6. 소수의견: 특이사항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